

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(22.2.25.기준)

1 강사수당 지급기준

1. 일반교육 강사 지급기준

(단위: 천원)

등 급	대 상		지 급 액		비 고
	공공분야	민간분야	기본 1시간	초과 시간	
특 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·현직 차관(급) 이상 전·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교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	400	200	민간분야 초과 매시간 지급
전 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·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률·경제·사회·문화·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	240	120	
보조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 		40	40	

- 주) 1.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[별표2]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
2.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청탁금지법」과 「같은 법 시행령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

2.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

(단위 : 천원)

등 급	대 상(전·현직)	지 급 액		비 고
		기본 1시간	초과 시간	
정보화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·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, 박사·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	150	100	
정보화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·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, 기술사소지자,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	100	80	
정보화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·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,2이외의 강사, 	80	70	
보조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 	40	40	
이 러 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, 질의응답,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	20 (1일)	-	

- 주) 1.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)1~2 준용
2. 정보화 교육과정(첨단기술)강사: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
3.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: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

3.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

(단위: 천원)

등 급	대 상	지 급 액		비 고
		기본 1시간	초과 시간	
FT 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•기업 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•전·현직 장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	230	150	
FT 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•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•전·현직 차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	200	130	
FT 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•대학 교수 이상 •전·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	150	100	
FT 4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•대학 전임강사(급) 이상 •전·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	120	80	

주) 1. 퍼실리테이터 요건(역할) :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

4. 자문·지도 강사 지급기준

(단위: 천원)

구 분	지 급 대 상	지급기준	지급액
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, 간담회 등 참석자 •교육과정 설계자문·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	1시간	100

주) 1.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의 “운영수당” 준용

5.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

(단위: 천원)

구 분	출강 인원	5인 이하	6 ~ 10인	11인 이상
	1시간		500	600

주) 1.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%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
2.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

6.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

- 외국공무원과정을 외국어로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강사수당, 퍼실리테이터 수당 등은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및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의 150%를 지급한다.

7.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

1) 강사료 산정기준

가. 강의시간 산출

-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,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 (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

나.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

- 원칙 : 일자별 산정 방식
- 세부내역
 -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
 -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,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(주제)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

【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(1회의 기준)】

지급주체	강의등 일자	대 상	내용(주제)	지급대상 여부
같은 경우	같은 경우	同	同	×
		同	異	○
		異	同	○
다른 경우	다른 경우	불 문		○
	불 문			○

2) 여비 산정 기준

-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 『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』에 따라 별도 지급

3)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

수강 인원	할 증 률
100인 이상 ~ 250인 미만	20%
250인 이상	30%

- 주) 1.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
 2.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
 3. 실시간 원격 비대면 교육시 적용 제외

2 원고료 지급기준

- 지급대상 : 강의용 원고 집필자
- 대상원고 : 제출 원고(부교재 포함)

구 분	내 용
지급단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A4용지 1면당 12,000원 지급 • 파워포인트 1면당 6,000원 지급
지급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※ 강사1인에 대한 1주(5일간)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) ※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
A4 1면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, •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, 또는 1면 기준 300단어
산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%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※ 그림, 도표 등은 그 그림,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※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•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(수정원고는 미반영)

주) 1.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(다만,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)